

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[원주영 의원 대표발의]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621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. 24.

발의자 : 원주영, 한근수, 정현미,
김동훈, 이정애, 박윤옥,
김지훈(민), 한송연, 이수련,
이진환, 김상수, 박은경

1. 제안이유

남양주시 공공 캠핑장의 위탁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, 위탁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설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리·운영 위탁시 사용료 수납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나.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규정 신설(안 제10조)
- 다. 캠핑장 위탁 관리·운영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 신설(안 제12조)
- 라. 캠핑장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신설(안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련법령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관리·운영 위탁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을 시설물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제9조제1항 중 “법인·단체”를 “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

- ② 수탁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.

-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·운영하여야 한

다.

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·양여·교환 또는 재위탁, 시설전체 임대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, 시장의 승인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·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.

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탁관리·운영의 해지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3. 수탁자가 관리·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4.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·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보험가입) ① 시장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건

물 및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(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| <p>제3조(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관리·운영 위탁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을 시설물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100분의 50 감경 가. ~ 다. (생 략) <u>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u></p> <p> 마.·바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</p> | 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u></p> <p> 마.·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9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</p> | <p>제9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 ----- -----</p> |

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----- 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

② 수탁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·양여·교환 또는 재위탁, 시설전체 임대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, 시장의 승인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·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.

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

<신 설>

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탁관리·운영의 해지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3. 수탁자가 관리·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4.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

<신 설>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·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시장은 감사

<신 설>

제10조 (생 략)

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 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보험가입) ① 시장은 캠핑 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건물 및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제14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자치법규명

-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13조(보험가입) ①시장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현재 수동관광지 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자(고로쇠마을운영위원회)가 공공캠핑장 보험 가입을 하여 별도의 비용발생하지 않음.
- 「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 박선영

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4조(손해보험 및 공제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건물, 선박

2.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·기계 및 기구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(有償)·무상(無償)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제20조(수탁재산의 관리)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관리상황의 보고 등)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·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, 관리수탁자,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,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